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위루트파이낸셜 주식회사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2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 120만원
임원	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보고 준수의무 위반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5조 제1항 및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4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*하여야 하고, 해당 약관 및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,

*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

위루트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이용자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면서, 법령상 보고기한보다 32일 지연 보고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5조 제1항
2.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41조 제2항